

단양 향교의 토지 관련 고문서 자료와 경제 기반

왕 현 중*

-
- I. 머리말
 - II. 단양 향교의 경제적 기반
 - III. 단양 향교의 토지 관련 자료 소개
 - IV. 단양 향교의 경제 기반과 운영 변화
-

I. 머리말

조선시대 향교는 조선왕조국가의 국정 교학인 유교를 바탕으로 하여 교육과 제례를 수행하며 지역사회에서 풍속 교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 향교는 지방의 교육기관으로서 유생과 교생의 연마를 위해서는 일정한 재정 기반이 필요하였으므로 국가는 향교에 토지와 노비를 군현의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지원하였다. 각 지방의 향교는 자체적으로도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각종 행사와 운영비에 충당하고 있었다.

단양 향교는 다른 지역의 향교와 마찬가지로 향교의 재정 기반과 운영실태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향교의 건축과 중건과 관련된 자료로서 『○○중수절목(重修節目)』을 통하여 향교 건물의 건축과 비용 지출에 대해 알 수 있으나 이런 자료는 남아 있지 않은 대신에, 향교에 부속된 토지 전답을 지주제로 운영하며 산출된 자료인 『향교위전답안(鄕校位田畓案)』, 『○○도조기(賭租記)』, 『○○수도가상성책(收賭加上成冊)』과 같이 향교의 재정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

* 연세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볼 수 있다. 또한 조선후기에는 향교의 행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종 계가 활성화되어 『○○계절목(稷節目)』을 작성하여 일정한 비용 염출의 근거로 삼기도 하였다. 이러한 향교의 경제 기반과 관련된 자료들은 현재 향교에 일부 소장되어 있지만 자료의 작성 연대가 크게 차이가 나거나 자료의 분포도 역시 분산적이어서 조선후기 이래 향교의 경제 기반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는 매우 곤란하였다.¹⁾ 여기에서는 단양 향교에서 소장한 경제 관련, 특히 19세기 중 후반 철종·고종시기 토지 전답을 경영하여 얻은 수입을 기록한 일련의 장부와, 비교적 최근인 1963년 이래 13년 동안 기부금 내역 등을 검토하려고 한다. 이로써 19세기 중반이후 단양 향교의 경제 기반과 재정 운영 실태의 실상을 드러내려고 한다.

II. 단양 향교의 경제적 기반

조선시대에는 향교는 각 군현 단위로 설치되어 고을의 교육을 공식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었다. 향교는 국가로부터 토지와 책, 노비 등을 지급받아 운영하였으며, 교관이 정원 30명 정도의 규모로 학생들을 받아 교생으로 가르쳤다.

향교의 재정 운영을 위해서 토지가 지급된 것은 이미 고려시기부터였다. 조선시기에 들어와서는 태종대부터 정식으로 향교에 학전(學田)이라는 이름으로 일정한 토지가 지급되었다. 이후 학전의 규모는 몇 차례 조

1) 조선후기 향교의 경제적 기반에 대해서는 각 향교의 향교지를 통해 일부 소개되어 오다가 주로 1980년대 자료 연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김용덕, 「조선후기 향교연구」 『한국사학』 5, 1983 ; 강대민, 「조선후기 향교의 재정적 기반」 『부산사총』 2, 1986 ; 윤희면, 「조선후기 향교의 경제 기반」 『한국사연구』 61-62, 1988 ; 임선빈,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후기 직산향교의 운영실태」 『고문서연구』 21, 2002 ; 정동락, 「고령향교의 연혁과 운영기반」 『민족문화논총』 26, 2002.

정되었고 성종 23년에는 군현의 등급에 따라 10결에서 5결 정도로 차등 지급되었다.²⁾ 그후 『속대전(續大典)』에 이르러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 “학전, 성군관 400결, 사학(四學)은 각 10결, 주부(州府) 향교는 7결, 군현 향교는 5결”로 되었다.³⁾ 이는 향교의 교육적 기능과 고을의 유교 중심지로서 기능하기에 충분한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향교의 재산은 국가에서 지정한 면세지로서 단지 수조권으로서 학전 5결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외에도 향교의 매입, 편입, 기증 등의 방법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두고 있었다. 그래서 향교의 재정 운영은 실제 해당 고을에서 향교와 관련된 인사들이 마련하는 비용으로 대부분 충당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결국 각 군현의 위세와 지역인사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향교의 재정 운영의 규모가 크게 달랐다고 할 수 있다.

단양향교는 1415년(태종 15)에 세워졌다. 설립 취지는 현명한 유학자의 위패를 모셔 놓고 배향하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한 것이었다. 명종 초기 이황(李滉)이 군수로 있을 때 지금의 자리로 옮겼다고 한다. 현재 위치는 충북 단양군 단성면 상방리 137-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조선 후기에는 여러 차례 건물 수리되기도 하였다. 영조 때 군수 박필부(朴弼溥)와 조정세(趙靖世)가 두 차례 중수하였고, 정조 때 군수 조경진(趙景鎭)이 명륜당을 중수하였다고 한다. 현재 남아 있는 건물로는 대성전, 동무, 서무, 명륜당, 동재 등과 부속건물이 남아있다. 또한 1971년과 1977년에 각각 중수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단양 향교의 건물 중수에 대한 풍부한 자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남아있지는 않다.

그런데 1894년 갑오개혁이후 신교육제도의 실시로 소학교·중등학교 등이 설치되면서 향교의 교육 기능은 없어졌다. 대신에 향교는 지역사회

2) 『대전속록(大典續錄)』 권2, 호전(戶典), 제전조(諸田條).

3) 『속대전(續大典)』 권2, 호전(戶典) 제전조(諸田條).

에서 유교의 보급과 진흥을 위해 매년 일정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봄과 가을에 석전(釋奠)을 봉행(奉行)하며 초하루·보름에 분향을 하고 있다. 현재 단양 지역에는 1914년 일제에 의한 지방 행정 구역의 변동조치에 따라 종래 단양과 영춘 지역이 통폐합되었다. 그래서 단양군에는 2개의 향교가 있지만 이번 분석 대상은 단양향교에 한정하였다.⁴⁾

Ⅲ. 단양 향교의 토지 관련 자료 소개

조선후기 단양 향교의 경제 기반과 관련된 자료는 대개 전답 소유 실태와 지주제로 인한 소작료 수입 등을 알 수 있는 장부와 향교 행사를 위한 각종 향계와 기부금 등을 기록한 장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음은 현재 단양향교에 소장된 고문서의 제목과 작성 연대를 일별하여 보여준 것이다.⁵⁾

<표 1 단양 향교 경제 기반과 관련된 자료 현황>

[자료 1] 향교위전답안(鄕校位田畱案) (작성 연대, 1853)
[자료 2] 토지매매문기(土地賣買文記) (작성 연대, 1853)
[자료 3] 토지매매문기(土地賣買文記) (작성 연대, 1864)
[자료 4] 향계절목(鄕契節目) (작성 연대, 1872년 壬申, 추정)
[자료 5] 단양군순영회학교중보배전교구절목(丹陽郡巡營劃下校中補弊錢爲球節目) (작성 연대, 1886, 추정)
[자료 6] 교궁전답수도가상성책(校宮田畱收賭加上成冊) (작성 연대, 1908)
[자료 7] 적성록(積誠錄) (작성 연대, 1963~1974)
[자료 8] 토지소작료대장(土地小作料台帳) (작성 연대, 미상)
[자료 9] 장림토지환매잔액부(長林土地換賣殘額簿) (작성 연대, 1965)
[자료 10] 토지명기장(土地名記帳) (작성 연대, 미상)
[자료 11] 토지명기장(土地名記帳) (작성 연대, 미상)

4) 단양 향교에 대한 설명은 『단양군지』(단양군, 2005), 제6편 문화예술, 505~506쪽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단양군지』(단양군지편찬위원회, 1977)과 『단양향교지』(유도회 단양지부편, 1982)를 참조하였다.

5) 『단양군지』에 소개된 단양 향교의 해설 기사에서는 “전적은 판본 5종 42책, 사본 11종 15책이 소장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향계절목》, 《청금록》, 《서재유

[자료 1] 향교위전답안(鄕校位田畵案) (작성 연대, 1853)

이 자료는 단양 향교가 가지고 있는 교위 전답을 측량하여 기록한 것이다. 어느 한 시기의 것이 아니라 여러 시기의 것으로 나뉘어져 있다. 우선 1778년(건륭(乾隆) 43년, 정조 2, 무술(戊戌)에 작성된 에 작성된 구래의 양안에 기초하여 재작성된 자료가 있다. 여기에는 토지의 순서와 내역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각 필지마다 별도의 소유자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1778년에는 여러 사람의 토지였다가 어느 시점에서 향교의 재산으로 매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향교의 양안은 1853년(합풍 3,癸丑, 철종 4)에 다시 개수하면서 토지의 위치와 원 소유자명 등을 추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표지에 ‘계축년(癸丑年) 3월 개수정(改修正)’이라고 되어 있다).

총 필지는 79개 필지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단양 향교 교위 전답의 내역(단위: 면적-척, 결부-속)>

번호	지번	번호	전답	등급	면적	결수	번호	지번	번호	전답	등급	면적	결수
1	天	44	直田	3	783	55	41	衣	66	直田	5	600	24
2	天	45	梯田	3	938	59	42	裳	2	直田	4	1980	109
3	天	45	圭田	2	240	20	43	裳	2.2	直畚	4	140	8
4	天	47	圭田	5	207	8	44	裳	43	直田	4	960	53
5	洪	53	直田	4	760	42	45	裳	44	直田	4	1440	53
6	洪	80	直田	4	328	18	46	位	61	直田	5	1023	41
7	洪	83	直田	3	5561	387	47	位	61.2	直田	5	3230	129

안》, 《향교위전답안》 등은 향토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 중에서 단양 향교의 경제적 기반을 알 수 있는 자료는 극히 일부만 남아있다.

8	荒	5	梯田	5	1421	57	48	位	62	直田	6	1200	30
9	荒	3	直田	5	1422	57	49	議	104	直畚	4	1292	71
10	月	35	直田	5	10695	588	50	國	23	直畚	6	2940	162
11	盈	24	直田	6	2784	70	51	國	75	直田	5	4500	180
12	盈	25	直田	6	232	6	52	虞	50	直畚	5	858	34
13	盈	26	直田	6	768	19	53	唐	34	直田	5	1188	47
14	盈	27	直田	6	1350	34	54	唐	51	直田	6	27336	683
15	盈	28	直田	6	1400	35	55	弔	31	直田	5	12555	502
16	盈	29	圭田	6	270	7	56	弔	53	直田	5	1700	68
17	盈	30	直田	6	608	15	57	弔	66	直田	4	2840	161
18	辰	42	直畚	4	630	35	58	問	17	直田	6	1900	47
19	宿	6	直畚	4	630	35	59	首	22	直田	6	600	15
20	列	72	直畚	4	330	18	60	首	33	直田	6	6600	165
21	列	92	梯畚	4	418	23	61	首	37	直田	6	3400	85
22	張	27	直畚	4	450	25	62	首	37.2	直田	6	2400	60
23	張	30	梯畚	4	652	36	63	首	81	直田	6	3300	82
24	張	33	圭畚	4	342	19	64	草	4	直田	6	2156	54
25	張	89	直田	4	304	17	65	木	38	梯田	4	2397	158
26	寒	4	直畚	4	242	13	66	身	47	直田	5	3071	123
27	暑	14	直田	5	1080	43	67	髮	2	直田	4	1517	83
28	往	7	直田	4	240	13	68	五	99	梯田	5	1375	47
29	東	27	直田	6	2604	65	69	五	100	直田	5	1739	96
30	皇	33	直田	5	3264	130	70	五	101	梯田	4	6357	350
31	皇	36	直畚	5	645	26	71	恭	118	直田	5	8085	323
32	制	153	直田	4	2408	132	72	惟	36	梯田	5	4274	171

33	制	154	直田	6	6864	172	73	貞	99	直田	5	3596	144
34	文	22	梯畚	4	1025	56	74	大	67	直田	6	5644	310
35	乃	3	直畚	4	792	43	75	敢	157	直畚	5	390	16
36	乃	4	直田	4	2720	150	76	敢	158	直畚	5	378	15
37	乃	23	直田	4	4332	238	77	敢	163	圭畚	5	871	35
38	乃	28	直田	4	4128	227	78	敢	175	直畚	5	987	39
39	服	49	梯畚	4	540	32	79	光	62	直畚	4	1248	54
40	服	50	直畚	4	252	14	합 계					192726	7866

위의 단양 향교 교위답은 모두 7결 76부 9속이었지만, 중에서 44부 7속은 향교의 대지였고, 1결 47부는 진전이였다.⁶⁾ 이에 따라 실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5결 85부 2속이었다. 향교의 토지가 위치해 있는 곳은 당시 대상 지역으로 불렸던 읍내원(邑內員), 후평원(後坪員), 현천원(玄川員), 덕상동원(德尙洞員) 등이며, 동면(東面)에서는 동면원(東面員), 남면에서는 장정리원(長亭里員), 조산촌현곡원(造山村玄谷員), 하리원(下里員), 전반원(典盤員) 등지이며, 소야면(所也面)에는 각기원(角基員), 하원곡원(下元谷員), 북일리원(北一里員), 북이리원(北二里員) 등지로 흩어져 있었다.⁷⁾ 전체 79필지 중 평균 등급은 4.75로 나타나 4등급과 5등급이 많았으며, 평균 면적은 2,340척이었다.

그런데 이 양안에는 본래의 기록과 위에 덧붙인 2개의 첨지 자료가 혼재되어 있다. 원래 작성된 양안은 함풍 3년 계축(癸丑)으로 1853년에

6) 위의 표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통계상 7결 86부 6속인데, 이는 합계 7결 76부 9속과 비교하면 9부 7속이 더 많게 잡혀 약간의 차이가 난다. 착오가 난 이유는 국(國) 자 23번 답의 경우 2940척, 6등, 16부 2속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7부 3속 가량이 된다. 이때 8부 9속 만큼 더 높게 결부가 판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7) 「교궁전답수도가상성책」의 토지 위치에서 인용하였다.

해당되는 것이지만, 또 다른 첨지는 동치(同治) 3년 갑자(甲子)인 1864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1853년에 작성된 양안에다가 1864년에 추가된 전답 내역을 포함하여 재정리한 문서로 보인다.

또한 이 자료에 붙어 있는 또다른 첨지는 무진년(1868, 고종 5, 추정), 기사년(1869, 고종 6, 추정), 신미년(1871, 고종 8년, 추정) 등 3개년의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첨지에는 당해 년도의 소작료 수취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총괄하여 정리하면 이 단양 향교의 교위 전답은 모두 4개년, 즉 원래 기록인 1853년과 1868년, 1869년, 1871년 등의 소작료 수취 상황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1853년도 소작료 수입의 총액은 얼마였는가. 이는 도전(賭錢)과 도조(賭租), 병작(竝作) 등 3개 항목으로 나뉘는데, 도전 54량 6전, 도조 6석 14두와 추가로 새로 매입한 답의 도조 100두, 병작 소출에 따라 수봉(收捧)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자료의 맨 끝에는 양안의 재정리와 추수 상황을 담당한 관리의 성이 기록되어 있는데, 도유사는 송(宋), 좌수 이(李), 장의 신(申), 장(張)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재임 송정구(宋廷龜), 장의 신정학(申禎學), 장윤급(張潤汲)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료 2] 토지매매문기(土地賣買文記) (작성 연대, 1853)

이 문기는 1853년(함평 3, 계축) 3월에 향교의 재임 송정구(宋廷龜), 신정학(申禎學), 장윤급(張潤汲)에게 발급한 문기이다. 매득한 땅은 단양읍 북면 평동(坪洞) 다식원(多食員)에 있는 공자(恭字) 96번 답 6부 9속(3두락, 2배미)와 용정원(龍井員) 감자(敢字) 151번 답 1부 6속, 158번답 1부 5속, 163번답 3부 5속, 175번답 3부 9속(6두락 2배미) 등 5필지로 합 9두락 100량에 교중(校中)에 영원히 방해한다는 것을 선언하여 후일에 참고로 삼는다고 하였다. 답주는 유학 이민근(李民謹)이며 증인은 유학 송정

진(宋鼎鎭), 장보항(張輔亢), 지명언(池命彦)이며, 집필자는 유학 이인익(李仁益)이었다.

[자료 3] 토지매매문기(土地賣買文記) (작성 연대, 1864)

관에서 내린 수결(手決)은 남면 과자(果字) 3필지의 땅을 향교의 재산으로 관에서 인정하게 한다는 것이다. 앞서 토지 매매 문기를 증거로 제출하여 관의 공인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날짜는 1864년(동치 3년, 갑자) 1월 15일에 재임 신(辛), 장(張), 이(李) 등이 올린 문서이다.

[자료 4] 향계절목(鄉契節目) (작성 연대, 1872년 壬申, 추정)

이 자료는 향계절목(鄉契節目) 표지, 쇠가탈호기(刷家頗戶記), 경인향청사광소봉기(庚寅鄉廳沙光所奉記, 1830), 향청예하의궤(鄉廳例下依軌) 향계절목 속표지(임신(壬申) 정월, 1872) 병자취점시분배군기환입고기(丙子聚點時分配軍器還入庫記, 1876), 완문(完文), 향청둔전남초봉상기(鄉廳屯田南草奉上記), 추환총수기(秋還摠數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향계절목은 단양 고을의 서리들이 근무하는 작청(作廳)에서 기록한 것으로 향계에 관한 완문과 절목 이외에도 다양한 부세 관련 자료가 같이 병기되어 있다.

우선 향계 절목의 완문(完文)에서는 1869년 기사(己巳)에 단양 향의 장로들이 비용의 부족을 우려하여 교구책을 마련한 지 3년이 지난 1872년, 고을의 여러 임원들이 118량을 모았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관에서 보조하여 준 돈 10량으로 고을의 여론에 따라 분배할 것이라고 하였다. 민간에 분배하여 이자를 받아 매년 각영의 예납(例納)의 비용으로 삼을 것을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마련된 향계의 자금은 관보전 10

량, 향계전 118량을 합하여 128량을 자본금으로 하여 북삼면(北三面) 각 리 15개리에 취식(取殖)하여 매년 10월 말 일에 모두 64량의 이자를 납부하는 것으로 하였다.

자세한 내역을 살펴보면, 2량 감영 주인에게 주는 예정비(例情費), 1량 5전 병영 주인에게 주는 정비, 1량은 병영의 장방에게 주는 정비, 1량은 후영 주인의 정비, 5량은 청의 고사를 지내는 경비, 18량은 매달 1량 5전식 좌수(座首)의 비용, 10량은 인부 배행 및 1년 용용별감의 비용, 25량은 매년 첩보 식리의 자금으로 이용할 것 등을 규정해 놓았다. 또한 북일리(北一里), 북이리(北二里), 소야촌(所也村) 등 각리에 분배하는 금액을 명시하고 분배의 직책을 맡은 존위(尊位), 동임(洞任) 등의 명단을 덧붙여 놓았다. 특히 소야촌에 분배된 자금은 향교에 붙여져 사용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자료는 단양군에서 소요되는 비용 마련을 위한 향계의 식리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즉 128량의 자금을 모아 자본금으로 삼고 3개리에 분배하여 64량의 이자를 받아 지방 행정에 필요한 비용을 보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 5] 단양군 순영획하 교중보폐전 교구절목(丹陽郡巡營劃下校中補弊錢矯掇節目) (작성 연대, 1886, 추정)

향교의 운영에 대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감영에서 500량을 내어 주어 식리를 통해서 비용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각면리 15개에 500량을 분배하여 주고 식리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비용으로 쓰라고 하였다. 문서 작성 연대는 병술(丙戌, 1886)년으로 추정된다. 이때 향교의 재임들을 보면, 도유사 이선익(李先翊), 장의 송순일(宋淳一), 장준급(張俊汲), 유유사(儒有司) 이영하(李英夏), 향유사(鄉有司) 박시헌(朴時憲)이었으며 유생(儒生)으로 송정화(宋廷和), 김선(金銑), 신필부(辛必富), 신재용(申在龍), 장문한(張文漢), 장효급(張孝汲), 장수근(張守根), 조원식(趙元植), 박대림(朴

大林), 박준수(朴準壽), 김동수(金東秀) 등이 기록되어 있다.

[자료 6] 교궁 전답 수도 가상성책(校宮田畝收賭加上成冊) (작성 연대, 1908)

이 자료는 무신(戊申, 1908) 2월 향교 소유의 전답에 대한 도조를 다시 정비하여 기록한 장부이다. 각 필지별로 기존의 도조(賭租)에다가 일부 추가로 받을 것을 가(加) 몇 두(斗)로 추가하여 표기하고 있다. 본래 도조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추가 79필지인데, 총 도조량은 426추가 5승이며, 여기에 88두를 추가로 받기조를 받아야 할(整)로 따라 향교의 전답에서 나오는 총 소작료 수입은 514.5두였다.

[자료 7] 적성록(積誠錄) (작성 연대, 1963~1974)

향교에서 봄과 가을에 두 차례 행해진 석전 제사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사회의 유지들이 모금한 내역을 기록한 장부이다. 1963년 가을부터 1974년 봄까지 11년에 걸쳐 모금한 사람의 이름과 액수, 지위, 또는 거주지 등을 표시하였다.

(1) 1963년(癸卯) 음력 8월 5일에 모집한 내용에는 장남규(張南奎), 장양우(張良于)를 비롯하여 45명이 기금을 냈고, 충청북도 도지사 김효영(金孝榮)도 1천원을 내기도 하였다.

(2) 1967년(丁未) 2월 4일에 모집한 내용으로는 단양군 교육장이 1천원을 낸 것을 비롯하여 19명의 모금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3) 1967년(丁未) 8월 7일에 모집한 내용으로는 단양 군수가 2천원을 낸 것과 단양 교육장 1천원을 낸 것을 포함하여 8명의 모금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4) 1968년(戊申) 2월 10일에도 단양 군수 2천원과 단양 교육장 1천원을 비롯하여 10명의 모금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5) 1969년(己酉) 2월 6일에는 단양군수와 단양 교육장 외, 적성면 각기리에 사는 임재호(林在鎬)가 모금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6) 1969년(己酉) 8월 8일에는 매포면 평동리에 사는 윤갑병(尹甲炳)이 1천원을 낸 것을 비롯하여 13명의 모금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7) 1970년(庚戌) 2월 1일에는 단양군수 지종원(池鍾元)이 3천원을 낸 것을 비롯하여 14명의 모금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8) 1970년(庚戌) 8월 4일에는 단양군수를 비롯하여 경찰서장, 교육장 등 5명의 모금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9) 1971년(辛亥) 봄 석전 제사를 위해 당시 효부 수상자인 이원희(李元姬)의 1천원, 충북질소주식회사 이천영(이천영)의 1천원, 단양 경찰서장 안상호(안상호)의 1천 5백원, 단양 교육장 1천원 등 4명의 모금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10) 1971년(辛亥) 가을 석전 제사를 위해 단양 군수 정경모(鄭經模)의 2만원, 우동식(禹東植)의 3백원 등 16명의 모금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11) 1972년(壬子) 봄 석전 제사를 위해 이정남(李正南) 1명의 기부 사실을 기록하였다.

(12) 1972년(壬子) 가을 석전 제사를 위해 단양 군수 정경모(鄭經模)의 5천원 등 8건의 모금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13) 1973년(癸丑) 봄 석전 제사를 위해 단양 군수 정경모(鄭經模)의 5천원 등 9건의 모금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14) 1973년(癸丑) 가을 석전 제사를 위해 단양 군수 이영득(李永得)의 1만원 등 3건의 모금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15) 1974년(甲寅) 봄 석전 제사를 위해 단양 군수 이영득(李永得)의 1만원 등 6건의 모금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자료 8] 토지소작료대장(土地小作料台帳) (작성 연대, 미상)

향교의 재산인 토지와 대지에서 나오는 소작료를 각 사람별로 나누어

수취한 기록이다. 기록 형식은 주소지, 경작자의 성명, 지번, 지목, 지적, 흰쌀 수량, 비고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주소지는 적성면 하리, 현곡리, 하진리, 상리, 하리, 대강면 호동, 매포면 매포리, 평동리, 우덕삼리, 매포리, 장정(長亭), 단양면 상방리, 현천리 등으로 나타나 있다. 이렇게 하여 모은 소작료는 모두 533.5승이었다.

그런데 향교의 토지 소작료 대장의 작성 연대가 나타나 있지 않아서 연대를 알 수 없다. 다만 초등학교(대강면 장정), 협동조합장 등의 명칭과 한글로 성명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 1960~70년대 전후 기록인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를 통하여 당시 향교 토지를 빌려주고 이에 대한 댓가로 매년 일정한 분량의 흰쌀을 소작료로 걷어들인 것을 알 수 있다.

[자료 9] 장림토지환매잔액부(長林土地換賣殘額簿) (작성 연대, 1965)

장림과 현천에 있었던 토지를 매도하고 남은 대금에 대한 기록이다. 1965년(乙巳) 2월 2일에 작성된 기록이다. 자세한 내역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장부의 말미에는 남은 차액을 가지고 빌려간 사람과 내역을 쓰고 있다.

<표 3 장림토지환매잔액부 내역>

내역	금액
을사(乙巳) 2월 토지 매도 대금	
장림토지매도대금(長林土地賣渡代金)	일금(一金) 173,000원
현천토지매도대금(玄川土地賣渡代金)	일금 152,240원
등기비(登記費)	일금 1,410원
잡비(雜費)	일금 1,250원
잔액(殘額)	일금 18,908원
을사춘형(乙巳春亨)~추형(秋亨)	
이자(利子)	일금 2,002원
추형시지이금계(秋亨時之利金計)	일금 20,100원
추형시계수매부족금지불(秋亨時癸需買不足金支佛)	일금 6,220원
차인잔액(差引殘額)	일금 13,880원

[자료 10] 토지명기장(土地名記帳) (작성 연대, 미상)

이 자료는 단양 향교에서 소유한 토지의 소재지와 상황을 상세히 기록한 것이다. 기록방식은 해당 토지의 주소, 지번, 지목, 지적, 사용자 혹은 경작자의 이름을 적고 있다.

<표 4 토지명기장 내역>

주소	지번	지목	지적	사용자와 경작자
梅浦面 平洞里	734	답(畓)	539평	신동순(申東舜)
大崗面 長亭				초등학교부지
丹陽面 上坊里		임야(林野), 화전(火田)		양명호(梁明浩)
"	152의2	대(臺)	81	이석구(李石求)
"	"	대(臺)	81	이석구(李石求)
"	142의1	대(臺)	77내	권영선(權寧先)
"	"	대(臺)	77내	이태구(李泰九)
玄川里	157	답(畓)	346	양명호(梁明浩)
大崗面 長亭里		대(臺)		협동조합장

[자료 11] 토지명기장(土地名記帳) (작성 연대, 미상)

이 자료는 단양 향교에서 소유한 토지의 소재지와 상황을 상세히 기록한 것이다. 기록방식은 해당 토지의 주소, 지번, 지목, 지적, 사용자 혹은 경작자의 이름을 적고 있다. 모두 55필지의 토지에 55명의 사용자와 경작자의 이름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향교에서 소유한 토지 중 대부분은 이미 대지로 변경된 것으로 당시 같은 지번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표 5 토지명기장 내역>

번호	주소	지번	지목	지적	사용자와 경작자
1	赤城面 下里	332	대(臺)	563평 내	한초원(韓超元)
2	"	"	"	"	합계춘(咸在春)

3	"		"	"	강동희(姜東熙)
4	"		"	"	정성진(丁成鎭)
5	"		"	"	박윤주(朴胤柱)
6	"	244	"	212평 내	박창실(林昌實)
7	"		"	"	김관옥(金寬玉)
8	赤城面 下里	244	대(垓)	212평 내	윤태현(尹泰鉉)
9	玄谷里	183	"	107	박철하(朴徹夏)
10	"	190	"	235평 내	이재천(李在天)
11	"	"	"	"	박종국(朴鍾國)
12	"	"	"	"	양중석(梁重錫)
13	下津里	602	"	198평	노만복(盧萬福)
14	"		"	"	김두희(金斗熙)
15	"	57	"	64평	조만석(曹萬石)
16	赤城面 下津里	56	전(田)	86평	임문갑(林文甲)
17	"	59	대(垓)	171평 내	임제삼(林在三)
18	"		"	"	공회당(公會堂)
19	"		"	"	임재덕(林在德)
20	"	55	"	149평 내	김문희(金文熙)
21	"		"	"	성태하(成泰河)
22	"	130	"	83평	광업소(鑛業所) 어성태(魚盛泰)
23	上里	272	"	441평 내	진영춘
24	赤城面 上里	272	대(垓)	441평 내	권혁승(權赫昇)
25	"		"	"	양재욱(梁在郁)
26	"		"	"	임승재(任承宰)
27	"	319	"	293평 내	장봉덕(張奉德)
28	"		"	"	조명달(趙明達)
29	"		"	"	박동문(朴東文)
30	下里	327	"	136평	서품출(徐品出)
31	"	"	전(田)	51평	김용주(金用周)
32	大崗面 芦洞理	297	대(垓)	135평 내	이석근(李錫根)
33	"		"	"	송영재(宋榮在)
34	"	298	"	37평	윤정근(尹正根)
35	"	295	전(田)	128평	장사룡(張師龍)
36	"	296	대(垓)	37평	여순구(呂淳九)
37	梅浦面 梅浦里	108의1	"	32평	강봉성(姜奉聖)
38	"	190의1	"	36평	면사무소(面事務所)
39	"	"	"	68평	권순왕(權順王) 충화옥
40	梅浦面 梅浦里	605의3	대(垓)	45평	김룡진(金龍鎭)
41	"	38의3	"	107평	장주원(張柱元)
42	"	38의2	"	61평	석탄광(石炭鑛) 이등용
43	平洞里	222	"	81평	이규명(李奎明)
44	"	223의1	"	86평	주영근(朱英根)

45	"	145	전(田)	87평	여갑운(呂甲雲)
46	反德三里	660의1	대(垓)	85평	송순길(宋淳吉)
47	"	"	"	85평	김동묵(金東默)
48	梅浦面 梅浦里	167의1	대(垓)	415평 내	윤봉경(尹鳳慶)
49	"	"	"	"	윤봉대(尹奉大)
50	"	"	"	"	권오필(權五弼)
51	"	"	"	"	김윤식(金允植)
52	"	"	"	"	김규벽(金圭璧)
53	"	"	"	"	유동수(柳東秀)
54	"	"	"	"	김일남(金一男)
55	"	"	"	"	이윤근(李允根)

IV. 단양 향교의 경제 기반과 운영 변화

단양 향교의 경제적 기반을 알 수 있는 일반 사료의 기술은 극히 부족한 상황이다. 심지어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 관찬 사료에서는 19세기 후반인 고종 년간의 단양 향교 사정을 전하는 사실이 단편적으로 제기될 뿐이었다.

1870년(고종 7)년에는 충청도 감사 민치상이 단양군 향교에 대한 지원 방안을 건의한 것이다. “방금 공충 감사 민치상(閔致祥)의 공문(公文)을 접하니, ‘단양군(丹陽郡) 향교(鄕校)의 성전(聖殿)이 해가 오래되어 새고 기둥이 썩어서 지금 수리하지 않을 수 없으니, 고유제·이안제·환안제의 향축을 본조에서 계품하여 내려보내 달라’고 하였습니다. 단양군 향교의 성전을 수리할 때의 고유제·이안제·환안제의 향축을 즉시 해사로 하여금 전례를 비추어 마련해서 내려 보내도록 하고 편리한 대로 날을 받아 설행하도록 아울러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⁸⁾ 이 건의를 받아들여 향교의 고유제, 이안제, 환안제의 향축을 마련하여 주었다고 한다. 이렇게 단양 향교의 경제적 상황을 거의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양 향교가 보관하고 있던 토지 관련 자료는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8) 『승정원일기』 고종 7년(경오, 1870), 2월 15일조 기사.

수 있다.

이 지역의 토지 관련 자료는 작성 시기를 기준으로 할 때 크게 전후 2개의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앞 시기의 자료는 대개 고종 초기인 1868년(고종 5)에서 1872년(고종 9)에 이르는 시기에 작성된 것이다.⁹⁾ 주된 자료는 향교와 관련된 전답의 매입과 측량을 통해 작성된 토지소유관련 장부와 소작료 수취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고종 초기에는 전국적인 폐단의 원성이 있었던 서원철폐 정책이 한편으로 추진된 반면, 기본 교육기관인 향교에 대한 관심과 육성 방안이 모색되던 시기였다.

당시 향교의 운영을 위한 제반 경비 조달이 시도되고 있었다. 우선 향교의 교위 전답에 대해 이미 정조년간에 마련된 토지를 1853년(철종 4)에 다시 파악하였고 이를 고종 즉위년인 1864년에 새롭게 재정비하여 양안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교위전답안에는 1868년에서 1871년 3개년의 소작료 수취 상황을 기록해 두었다.¹⁰⁾ 1868년도 이후 3년간 소작료 수취의 통계는 교위 전답안에 붙어있는 첩지를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으나 아쉽게도 첩지가 제각기 붙여 있고 총계도 또한 떨어져 나가 전체 소작료의 수입 실체를 알 수 없다. 그래서 19세기 중반과는 시기적으로 약 55년 정도 떨어져 있으나 1908년의 기록이 남아 있어 양자를 비교해 보았다.¹¹⁾

<표 6 단양 향교 전답의 도조 수취의 변화(1853~1908)>

번호	지번	지번	전답	등급	전답안			가상정책	
					도조	도전	상태	도조	추가
1	天	44	전	3		9		9	3
8	荒	5	전	5				2	
10	月	35	전	5				48	5
11	盈	24	전	6				15	
12	盈	25	전	6		40			
13	盈	26	전	6					
14	盈	27	전	6					

9) 해당 자료는 [자료 1]~[자료5]까지가 해당된다. 물론 이전 시기에 작성된 전답매입 기록 등을 포함한 것이다.

15	盈	28	전	6					
16	盈	29	전	6					
17	盈	30	전	6					
18	辰	42	답	4	12			11	2
19	宿	6	답	4				22	
20	列	72	답	4	18			11	
21	列	92	답	4					
22	張	27	답	4	31			22	4
23	張	30	답	4					
24	張	33	답	4					
25	張	89	전	4		4			
26	寒	4	답	4	10			5.5	
27	暑	14	전	5		7		4	
28	往	7	전	4		2		16	
30	皇	33	전	5		18		10	5
31	皇	36	답	5				8	3
32	制	153	전	4		15		10	3
33	制	154	전	6		11		5	5
34	文	22	답	4			병작	8	7
35	乃	3	답	4		5		20	
36	乃	4	전	4		25		20	5
37	乃	23	전	4		5		17	3
38	乃	28	전	4		20		2	2
39	服	49	답	4	15			20	
40	服	50	답	4		4		4	2
41	衣	66	전	5		8	진전	5	1
42	裳	2	전	4		7		6	2
43	裳	2.2	답	4		4			
44	裳	43	전	4		9		6	2
45	裳	44	전	4		12			
46	位	61	전	5		12		18	15
49	讓	104	답	4			병작	8	3
50	國	23	답	6			병작	39	2
51	國	75	전	5		6	진전		
52	虞	50	답	5			병작	30	5
53	唐	34	전	5		15		10	3
54	唐	51	전	6		8		6	3
55	弔	31	전	5			진전	9	3
56	弔	53	전	5			진	4	2
57	弔	66	전	4		16		7	2
58	問	17	전	6		14		15	9
59	首	22	전	6				25	12
60	首	33	전	6		20			
61	首	37	전	6					
62	首	37.2	전	6		12		7	3
63	首	81	전	6		9			

64	草	4	전	6		7		6	2	
65	木	38	전	4		25		15	5	
66	身	47	전	5		15		13	2	
67	髮	2	전	4		13		7	5	
68	五	99	전	5		55		32	13	
69	五	100	전	5						
70	五	101	전	4					15	5
71	恭	118	전	5		25		25		
72	惟	36	전	5		15		20		
73	貞	99	전	5		12		15	5	
74	大	67	전	6		15		12	3	
75	敢	157	답	5	62			60	6	
76	敢	158	답	5						
77	敢	163	답	5						
78	敢	175	답	5						
79	光	62	답	4	5			5	3	
2	天	45	전	3		9				
3	天	45.2	전	2						
4	天	47	전	5						
5	洪	53	전	4			교대			
6	洪	80	전	4			교대			
7	洪	83	전	3			진전			
9	荒	3	전	5		4				
80	雲	27	전	6		10				
81	位	61.2	전	5		12				
82	位	62	전	6						
83	果	127	전	6				15	5.5	
84	被		전					6		
85	場	61	전	6				100		
86	果	124	전	6				6		
87	果	125	전	6				3		
88	果	126	전	6				4		
89	畧	63	전	4				17		
90	果	115	전	6				18	9	
91	有		전					5	2	
92	雲	27	전	6				8	3	
	합계				86	246		426.5	88	

- 10) 이 시기 소작료의 수취는 1853년에는 도전 54량 6진, 도조 6석 14두 등으로 나타나 있으나 실제 집계한 수치와는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 11) 표에서 사용된 자료는 「향교위전답안(鄕校位田畓案)」(작성 연대, 1853), 「교궁전답수도가상성책(校宮田畓收賂加上成冊)」(작성 연대, 1908)이다. 번호는 앞 자료의 수록 순서이고, 양자가 함께 비교 가능한 필지는 1번부터 79번 중에서 7개(2~7,9) 필지를 제외한 것이다. 따라서 80번 이하는 뒷자료에 해당 되면서도 앞 자료와 비교할 수 없는 필지이고 번호는 임의로 붙인 것이다.

1853년에 작성된 『향교위 전답안』 자료에서는 향교의 전답을 지주제로 운영하면서 소작료의 수취 방식이 도조(賭租)와 도전(賭錢), 그리고 병작 등 3가지 방식으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소작료 수취는 상당히 많은 필지에서 화폐인 도전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도조로 거두어들인 총액은 86두, 즉 5석 11두였으며, 도전으로는 24량 6전을 거두어들였다. 액수로는 현물과 화폐를 반반씩 거두어들였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양 향교의 소작료의 수취 방식에서는 병작 보다는 도조와 도전이 선호되고 있었다. 당시 농사의 작황이 풍흉에 의하여 수시로 바뀌었으므로 여건의 변화에 상관없이 소작료의 안정적 수취를 위해서는 도조 방식의 수취가 선호되었을 것이다. 또한 향교의 여러 행사의 물품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화폐의 형태로 도조를 바로 수취하는 것이 편리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편 1908년에 작성된 『교궁전답수도가상성책』에서는 모두 도조의 형식으로 수취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도조는 거의 매년 고정되어 있었으나 당해 년도 수취의 편차에 따라서 추가로 도조가 부과되고 있었다. 두 자료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필지는 일련번호 39, 복(服)자의 49번 필지 답으로 등급은 4등급이며, 결부로는 3부 2속의 토지인데 1853년에는 도조로 15두를 거두어들였다가 1908년에는 20두로 높였다. 또한 일련번호 75번 이하로 있는 감(敢)자의 4필지는 종전에는 모두 62두를 거뒀었다가 1908년에는 60두와 추가로 6두를 거두어 들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보아 시기적 간격이 너무 크고 비교할 수 있는 필지가 많지 않아서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단양 향교의 소작료 수취는 50여년 동안 크게 변화하지 않고 비슷하거나 약간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단양 향교의 경제적 기반에 관한 다음 시기의 자료는 대개 1960년대

에서 1970년대에 걸치는 자료이다. 대표적인 것이 소위 ‘적성록(積誠錄)’이라고 하여 향교 행사를 위해 거두어들이는 기부금, 혹은 협찬금의 내역을 기록한 자료이다.¹²⁾

<표 7 단양 향교의 석전제 행사 경비 마련 상황>

연도	봄(2월)		가을(8월)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963			45	18250
1967	18	8000	8	9500
1968	10	8900		
1969	3	3500	13	11900
1970	14	9100	9	12000
1971			16	27600
1973	9	12500	3	11500
1974	6	13000		

위의 표와 같이 1963년부터 1974년까지 8개년 동안 단양 향교에서 석전제의 경비를 모금을 통해 조달한 내용을 보여준다. 각 년도마다 단양 군수, 단양 교육장 등은 1~2천원의 거액을 기부하였고 간혹 영양산업주식회사 5천원, 충남질소주식회사 1천원 등 거액의 기부자가 있었다. 혹은 초석(草席) 등 물품으로 기부한 사람도 있었다. 1963년에는 기부자가 45명이나 되고 금액도 18,259원이나 되었지만 점차 기부자의 숫자도 줄어들었다. 다행히 기부 금액 총액은 조금씩 늘어가고 있었으나 당시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행사 경비의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12) [자료 7] 적성록(積誠錄) (작성 연대, 1963~1974) 각년도 기부 인원과 금액 참조.

단양 향교는 19세기 중반 이후 전과 답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점차 대지(垸地)로 소유하게 되었고, 일부의 토지에서만 경작지로 활용하고 있었다. 해방 이후 어느 시기에 수취한 소작료가 533두 5승이었을 정도로 수입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었다.¹³⁾ 그런데 1965년 2월에는 장림과 현천에 있는 토지를 매도하고 여기서 마련된 자금을 바탕으로 하여 이자를 일부 받는 등 별도의 수입을 확보하기도 하였다.¹⁴⁾ 1982년에 보고된 단양 향교의 재산 목록에 의하면 교궁대지 541평을 비롯하여 전 4필지 332평, 답 1필지 434평, 임야 13,063평, 대지 38필지 5,272평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⁵⁾ 이처럼 단양 향교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분은 대지로서 전용되었고, 여기에 모두 55명 정도의 인물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¹⁶⁾

위와 같이 단양 향교의 토지 관련 자료와 경제 기반과 재정 운영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조선왕조국가의 보호와 지원 아래 유교 교육과 제례를 담당하였던 단양 향교는 조선후기 이래 일정한 토지를 확보하여 지주제로 운영하면서 소작료 수입을 확보하여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일제의 침략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향교 재산을 유지하며 지역 유림들의 근거지로서 활동하였다.¹⁷⁾ 또한 1960~70년대에는 지역 사회의 유지의 도움과 자체 수입으로 연례행사로서 석전제를 지속하는 등 단양 지역 사회의 정신적 지주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13) [자료 8] 토지소작료대장(土地小作料台帳) (작성 연대, 미상). 이 자료는 작성 연대를 알 수 없고 농업의 경영 방식의 변화를 파악할 수는 없었다.

14) [자료 9] 장림토지환매잔액부(長林土地換賣殘額簿) (작성 연대, 1965)

15) 유도회 단양지부 편, 『단양향교지』 1982, 135쪽 참조.

16) [자료 11] 토지명기장(土地名記帳) (작성 연대, 미상) 참조.

17) 1923년 9월 28일에는 단양군에 명륜회(明倫會)를 조직하여 군내 유림 200여인을 모아 지방의 교화 진흥을 도모하기로 하고, 단양 군수와 경찰서장, 단양군 서무과장 등이 축하하였다고 한다(『조선일보』 1923년 10월 7일 석간 4면 참조).

[논문접수:2009.12.21, 심사시작:2009.12.22, 심사완료:2010.01.29]

주제어: 향교, 향교위전담안, 향계절목, 적성록

<ABSTRACT>

The land related documents and the economic base of Tanyang Hyanggyo

Wang, Hyeon-jong

Hyangkyo(郷校) is the government school which was established in the middle of Koryo Dynasty and so spread throughout the country on the beginning of Chosun Dynasty. It was as the provincial educational system and performed the two functions, the function of formal Confucianism's education and of religious service. Also Tanyang Hyangkyo was receiving some financial support as the property of land with the help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economic data which possess in Tanyang Hyangkyo remain 11 documents. Some of these materials are the records about the possessions of owned land and the amount of the collected rents from their tenants. This record which is called HyangkyoWe Jundap Ahn(郷校位田畚案, this is assumed to 1853), had revealed some data on the owned land after several modifications. Hyangkye JyelMok(郷契節目, this is assumed to 1872) are the account documents for the expenses of memorial ceremony. And these account books which are called JukSungNok(積誠錄), have recorded all contributor's list with was written from 1963 until 1974.

These data documents reveals the economic and financial operation that Tanyang Hyangkyo have maintained from middle of 19th century until recently. These documents tell us the background of Confucian event has existed in Tanyang area.

Keyword : Hyangkyo(郷校), HyangkyoWe Jundap Ahn(郷校位田畚案),
Hyangkye JyelMok(郷契節目). JukSungNok(積誠錄, all contributor's list)